

##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

■ 시행예정일: 2021년 11월 12일

■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교부용)</p> <p>&lt;생략&gt;</p> <p><b>제1조 (적용범위)</b>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, 결제 및 담보대출 등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,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</p> <p><b>제2조 (용어정의)</b>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. 2. “이용자”라 함은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을 말합니다. 3. “구매기업”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 등을</p>	<p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교부용)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<b>제1조 (적용범위)</b>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, 결제, 담보대출 및 「상생결제 운영요령」에 따른 예치계좌에 입금 및 예치계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,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</p> <p><b>제2조 (용어정의)</b> &lt;좌동&gt; 1. 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(이하 “외상매출채권”이라 합니다)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써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상생결제 운영요령」에 따른 상생매출채권을 포함하여 말합니다. 2. “이용자”라 함은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과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상생결제 운영요령」에 따른 협력기업을 말합니다. 3. “구매기업”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 등을</p>	<p>문구 변경</p> <p>법률 등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법률 등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및 법률 등</p>

<p><u>구매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</u></p> <p>4. “판매기업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</u>으로 결제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.</p> <p>5.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(이하 “외담대”라 합니다)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합니다.</p> <p>6. “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”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</u>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 한 당해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</u>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.</p> <p>7. 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”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</u>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 한 당해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</u>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출을 말합니다.</p> <p><u>&lt;삽입&gt;</u></p> <p><u>&lt;삽입&gt;</u></p> <p><u>&lt;삽입&gt;</u></p>	<p><u>구매하고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서, 「상생결제 운영요령」에 따른 “최상위 위탁기업”을 포함하여 말합니다.</u></p> <p>4. “판매기업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<u>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</u>으로 결제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.</p> <p>5.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(이하 “외담대”라 합니다)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<u>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</u>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합니다.</p> <p>6. “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”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<u>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</u>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 한 당해 <u>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</u>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.</p> <p>7. 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”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<u>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</u>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 한 당해 <u>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</u>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출을 말합니다.</p> <p>8. “예치계좌”라 함은 「<u>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상생결제 제도의 수행을 위해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한 <u>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</u> 명의의 계좌로서,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<u>납품대금 중 협력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</u>의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<u>납품대금</u>을 안전하게 예치하여 보관하기 위한 계좌를 말합니다.</p> <p>9. “선지급 신청” 및 “선지급”이라 함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발행한 <u>외상매출채권</u>을 수취한 이용자가 <u>외상매출채권</u>의 만기일 전에 예치계좌에서 지급을 신청하고, 이용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.</p> <p>10. “상생결제운영사”라 함은 「<u>상생결제 운영요령</u>」에 따라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으로, 상생결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</u>을 말합니다.</p>	<p>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법률 등 반영한 용어정의 신설</p> <p>법률 등 반영한 용어정의 신설</p> <p>법률 등 반영한 용어정의 신설</p>
---	---	--

<p>8. “미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”이라 함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않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.</p> <p>9. “전자적 장치” 라 함은 인터넷뱅킹, 펌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, 결제 및 담보대출 등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.</p> <p>10. “접근매체”라 함은 결제제도 이용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 &lt;생략&gt;</p> <p><b>제3조 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)</b> &lt;생략&gt;</p> <p><b>제4조 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해지)</b> ①&lt;생략&gt; ②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기취급된 외담대에 대하여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 및 외담대 상환시까지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<b>제5조 ~ 제6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7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)</b> 구매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재화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, 만기를 9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2020.5.29.까지는 150일 이내, 2021.5.29.까지는 120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.</p>	<p>11. “미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”이라 함은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않은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.</p> <p>12. “전자적 장치” 라 함은 인터넷뱅킹, 펌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 발행, 결제 및 담보대출 등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.</p> <p>13. “접근매체”라 함은 결제제도 이용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 &lt;좌동&gt;</p> <p><b>제3조 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)</b> &lt;좌동&gt;</p> <p><b>제4조 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해지)</b> ①&lt;좌동&gt; ②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발행된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 및 기취급된 외담대에 대하여 당해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 결제 및 외담대 상환시까지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.  &lt;좌동&gt;</p> <p><b>제7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)</b> 구매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재화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, 만기를 9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. &lt;삭제&gt;</p>	<p>호 체하 및 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호 체하 및 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호 체하 및 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및 만기일 단축 시행에 따른 문구 변경 및 삭제</p>
--	---	---

<p><b>제8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)</b></p> <p>① 구매기업은 은행과 제3조에서 정한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.</p> <p>②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의 결제제도 이용계약 여부를 전자적 장치에서 확인 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③ 은행은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역</u>을 판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.</p> <p>④~⑤ &lt;생략&gt;</p> <p><b>제9조 (결제방법)</b></p> <p>① 은행은 만기 도래된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내역</u>을 구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.</p> <p>② 구매기업은 만기 도래된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해당금액</u>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입금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은 제2항의 입금금액을 구매기업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거나 판매기업의 외담대를 상환하기로 합니다. &lt;삽입&gt;</p> <p><b>제10조 (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)</b></p> <p>① 같은 날 만기 도래된 외상매출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순서</u>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.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<b>제11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정보집중)</b></p> <p>① 은행은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, 취소, 변경 및 미결제 정보</u> 등을 금융결제원에 집중하여 은행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.</p>	<p><b>제8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)</b></p> <p>① 구매기업, 판매기업 및 협력기업은 은행과 제 3조에서 정한 <u>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.</u></p> <p>②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의 결제제도 이용계약 여부를 전자적 장치에서 확인 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은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역을 판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.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<b>제9조 (결제방법)</b></p> <p>① 은행은 만기 도래된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 내역을 구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.</p> <p>② 구매기업은 만기 도래된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 해당금액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입금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은 제2항의 입금금액을 구매기업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거나 판매기업의 외담대를 상환하기로 합니다. <u>또한, 예치계좌에 입금된 입금금액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출금하기로 합니다.</u></p> <p><b>제10조 (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)</b></p> <p>① 같은 날 만기 도래된 외상매출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순서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.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<b>제11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정보집중 및 정보제공의 동의)</b></p> <p>① 은행은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의 발행, 취소, 변경 및 미결제 정보 등을 금융결제원에 집중하여 은행간 정보를 공유할 수</p>	<p>계약 상대방 구체화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상생결제운영요령 제7조 반영한 문구 추가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조명 변경</p> <p>정보집중의 예외 명시</p>
--	--	---

<p>&lt;삽입&gt;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<b>제11조의 2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거래정지)</b></p> <p>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전자방식</u>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미결제 처리합니다.</p> <p>1.~4. &lt;생략&gt;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의 미결제 <u>전자방식</u> 외상매출채권 발행인인 구매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거래정지를 하며, 그에 따른 거래정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~4. &lt;생략&gt;</p> <p>③ 제2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발행인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</u> 결제제도와 관련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④ &lt;생략&gt;</p> <p><b>제12조 (거래내용의 확인)</b></p> <p>① 은행은 <u>전자방식</u> 외상매출채권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<b>제13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)</b></p> <p>① 구매기업은 <u>전자방식</u>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을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기업이 외담대를 취급한 경우에는 당해 <u>전자방식</u>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이 불가합니다.</p> <p>③ 구매기업은 기 발행된 <u>전자방식</u>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시 판매기업의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.</p> <p>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생략하기로 합니다.</p>	<p>있습니다. 단, <u>협력기업이 받은 상생매출채권 관련 정보는 제외하기로 합니다.</u>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<b>제11조의 2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거래정지)</b></p> <p>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&lt;삭제&gt;</u>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미결제 처리합니다.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의 미결제 <u>&lt;삭제&gt;</u> 외상매출채권 발행인인 구매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거래정지를 하며, 그에 따른 거래정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③ 제2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발행인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<u>&lt;삭제&gt;</u> 결제제도와 관련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.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<b>제12조 (거래내용의 확인)</b></p> <p>① 은행은 <u>&lt;좌동&gt;</u> 외상매출채권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<b>제13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)</b></p> <p>① 구매기업은 <u>&lt;삭제&gt;</u>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을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기업이 외담대를 취급한 경우에는 당해 <u>&lt;삭제&gt;</u>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이 불가합니다.</p> <p>③ 구매기업은 기 발행된 <u>&lt;삭제&gt;</u>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시 판매기업의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.</p> <p>④ &lt;좌동&gt;</p>	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
--	--	--

<p>1.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당일에 취소/정정하는 경우  2.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</p> <p>⑤ 구매기업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에 관한 판매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매기업 앞 취소/정정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취소신청서 제출시 판매기업의 동의 없이 취소/정정 가능합니다.</p> <p><b>제14조 (손실부담 및 면책)</b></p> <p>① 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등록한 매매계약내용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구매기업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②~④ &lt;생략&gt;</p> <p><b>제15조~제17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18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b></p> 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전자서명법」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&lt;삽입&gt;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금융결제원 「B2B규약」 및 동 「시행세칙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19조 (준거법)</b></p> <p>&lt;생략&gt;</p>	<p>1.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 발행 당일에 취소/정정하는 경우  2.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</p> <p>⑤ 구매기업이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에 관한 판매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매기업 앞 취소/정정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취소신청서 제출시 판매기업의 동의 없이 취소/정정 가능합니다.</p> <p><b>제14조 (손실부담 및 면책)</b></p> <p>① 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등록한 매매계약내용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구매기업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&lt;삭제&gt;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<b>제18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b></p> <p>&lt;좌동&gt;</p> <p>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전자서명법」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「상생결제운영요령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금융결제원 「B2B규약」 및 동 「시행세칙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19조 (준거법)</b></p> <p>&lt;좌동&gt;</p>	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용어정의 반영한 문구 변경</p> <p>적용 대상 법률 등 추가</p>
--	---	--

